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